

[공고 제2026-08호]

2026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문화센터 및 문화교실 수시대관 공고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에서는 2026년 문화센터 및 문화교실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센터장

1. 대관 개요

가. 대관기간

○ 수시대관 : 2026. 3. 31.(화) ~ 2026. 12. 31.(일) 중 상시*

* 1월 1일, 매주 월요일(휴관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대관 불가

나.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이메일 접수 (상시)

○ 문화센터 및 문화교실 : 문화예술팀 (070-8859-9929, culture4@seouleollim.or.kr)

다. 허가안내 : 개별 통보

라. 대관대상 : 세미나, 교육, 강연, 워크숍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마. 대관 우선순위

(1순위)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우

(2순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문화예술의 경우

(3순위) 비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로서 장애인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되는 경우

바. 대관절차



2. 대관 시설

가. 대관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수용인원	기준 시간	비 고
문화센터	1	86㎡(26평)	36명	시간당(1시간)	대관료 상세 사항은 시설대관규정 별표 1 에 따름 ※ 문화교실1 Floor(매트) 공간
	2	112.4㎡(34평)	48명		
문화교실	1	41.88㎡(12평)	15명	시간당(1시간)	
	2	42.24㎡(12평)	12명		

3. 제출서류

모든 파일은 반드시 하나의 압축폴더로(zip)*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축폴더명 : 수시대관신청서류_단체명(개인명)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필수	1 대관 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참조														
	2 대관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붙임1 참조														
	3 행사(공연) 계획서	○ 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참조														
	4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참조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1 참조 ○ 대표자, 담당자, 참여자 등 개인정보 제공자 모두 작성 필수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선택	7 대관료 감면 증빙 (해당 시) *미제출 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	○ 대관료 감면을 적용 희망 시 제출 필수 (붙임2 참조)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장애인예술인, 장애인개인</td> <td>복지카드 사본 1부</td> </tr> <tr> <td rowspan="2">장애인 단체</td> <td>「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시설</td> <td>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td> </tr> <tr> <td>장애예술단체*</td> <td>- 공간 사용자 전체 명단 - 30% 이상 인원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전체</td> </tr> <tr> <td colspan="2">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공모사업 및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td> <td>서울시 발행 공문 사본 1부</td> </tr> <tr> <td colspan="2">기타 사회복지기관</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만 해당. 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td> </tr> </table>	장애인예술인, 장애인개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장애예술단체*	- 공간 사용자 전체 명단 - 30% 이상 인원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전체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공모사업 및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시 발행 공문 사본 1부	기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만 해당. 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장애인예술인, 장애인개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장애예술단체*	- 공간 사용자 전체 명단 - 30% 이상 인원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전체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공모사업 및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시 발행 공문 사본 1부														
기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만 해당. 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장애예술단체 조건 : 공간 사용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 (공연/행사자 및 스태프에 한함, 관객 제외)																
8	기타 자료	○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대본 등)														

4. 신청 유의 사항

신청서 제출 시, 아래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제출서류 작성 시 행사명, 행사 장소, 행사 목적, 행사 내용, 출연자(강연자, 연기자, 전시작가 등) 및 출연단체의 약력 등을 상세 기재하고,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심의를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만 진행되며, 신청 마감 이후 추가 서류의 제출 및 검토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연속 대관 시 대관기간에 휴관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관일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장비의 반출입, 기자재 대여, 무대설치계획, 변경사항 등은 대관 허가 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시설대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 승인 통보 시 별도 안내 예정)

마. 음향 및 조명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명 콘솔 및 음향 믹서 운용 전담 인력을 필수로 대동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대관 신청자 섭외 및 부담입니다.

바.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행사의 내용, 출연자(강연자, 연기자, 전시작가 등) 등의 세부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공연내용과 다를 경우 승인 취소 및 향후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대관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시에는 향후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대관료, 대관제한, 대관 허가 취소, 대관료 부과 및 감면,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어울림플라자관리·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4752,20260119\)](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어울림플라자관리·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4752,20260119))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어울림플라자관리·운영에관한조례/\(9484,20250103\)](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어울림플라자관리·운영에관한조례/(9484,20250103))

5. 관련 문의

가. 시 간 : 화 ~ 금 10:00~17:00

나. 담당자

- 문화센터 및 문화교실 : 문화예술팀 김혜령 주임 (070-8859-9929, culture4@seouleoullim.or.kr)